

Working Paper 02-1-11

제 40차 U.N.
사회개발회의 논의내용

신 영 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I. 회의참석 방향 / 1

1. 정부 기본훈령 / 1
2. 회의 참석방향 / 1

II. 회의 진행상황 및 대표단 활동 / 3

1. 의장단 선출 및 개회연설 등 / 3
2.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의제 3(a))
관련 논의 / 6
3. 핵심의제 관련 최종 결의 주요내용 / 15
4. 기타 논의사항 / 20

III. 평가 및 후속조치 / 21

1. 관찰 및 평가 / 21
2. 향후조치 사항 / 22

부록 / 24

I. 회의 참석 방향

1. 정부 기본훈령

- 빈곤퇴치, 생산적 고용증대 및 사회통합 등 사회발전을 모색코자 하는 사회개발위원회의 활동 및 사업계획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동 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우리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
- 수석대표의 기조연설과 의제토론 과정에 적극 참여, 경제위기 극복 및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개발 노력을 소개하고, 사회개발 정상회의 및 사회개발 특별총회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정부의 의지 표명
- 여타 위원국 및 옵저버국들의 사회개발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정보교환에 참여하여 관련현안에 대한 국제적 동향 파악과 정보수집을 위하여 노력
-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정립된 기본입장에 따라 대처하되, 사전에 예견되지 않은 주요사안 발생시에는 본국에 청훈할 것
- 회의대표단은 회의종결 후 20일 이내 참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

2. 회의 참석방향

- 코펜하겐 선언의 공약사항과 사회개발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추가조치에 대한 이행상황 검토

-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빈곤경감, 고용창출, 사회통합의 3대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한 코펜하겐 선언의 10대 공약사항 및 2000년 사회개발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추가조치에 대한 아국의 이해 상황 검토

□ 지속적인 사회개발을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 소개

- 외환위기 이후 ‘생산적 복지’ 이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국민연금 확대실시, 의료보험 통합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 등 공공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목표를 강화하고자 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들을 홍보하고 각국의 경험 공유
- 아국의 경우 준비문서(전문가보고서, 「경제정책의 사회적 측면」)에서 경제위기상황하의 공공정책 추진시 사회적 목표를 중시하여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으며,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바, 아국의 경험과 교훈을 소개.

□ 사회그룹별 상황에 적합한 유엔의 사업계획 및 실천계획 검토

- 금번 사회개발위원회에 이어서 2002.2.25~3.1까지 유엔본부에서 제2차 세계노년대회 제2차 준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금번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검토하여 제 2차 세계노년총회 준비위원회에 반영
- 장애인 특별보고관의 장애인 인권상황의 모니터링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보이는 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전문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 정보접근성 제고

및 장애발생의 예방을 위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 소개

- “세계가정의 해” 후속조치 및 10주년(2004년) 기념 및 준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논의 결과를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의 방지 및 가정과 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정책에 반영

II. 회의 진행상황 및 대표단 활동

1. 의장단 선출 및 개회연설 등

가. 의장단 선출

- 2.11(월) 표제회의가 개막되어 제39차 사회개발위원회 의장단을 제40차 의장단으로 유임시킨 가운데 Faith Interarity(자메이카 노동사회안전부 사회안전국장)의장 주재로 진행됨.
- 첫날에는 의장의 개회 연설, Johan Schlovinck 경제사회 담당 사무차장의 의제 3 관련 설명, Dr. Jose Antonio Ocampo의 기조연설에 이어 의제 3(a)(사회정책의 통합)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

나. Faith Innerarity 의장 개회연설

- 1995년 코펜하겐 선언 및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 및 정부대표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경제·문화·사회 정책들의 통합을 통한 공·사 부문간의 상호협력 증진이 시급히 요구됨.

- 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적절한 금융 및 재정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반대로 금융, 재정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도 사회적인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될 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은 원칙적으로 서로 배타적이지 않음.
-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정책은 시장논리에 의해 설명이 안되는 사회부문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들의 공공지출의 현저한 감소, 심각한 채무의무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함.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경제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및 유엔산하 전문기구 등의 권고를 종합하여 완성한 금번 사무총장 보고서가 제40차 사회개발위원회의 토의를 보다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며, 의제3(b) “사회그룹별 유엔의 사업계획 및 실천계획 검토”에 대한 토의 역시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함.
 -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ODA이행
 - 금번 제40차 사회개발위원회의 우선 의제인 “사회·경제정책의 통합”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발전략 및 여타 관련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함

다. Johan Scholvinck 경제사회담당 사무총장 모두 발언요지

- 지난주 각각 뉴욕과 Porte Alegre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과 세계사회포럼은 경제적인 것은 “부”와 직결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인 것은 “빈곤 및 소회계층”과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케 함.

- 사회개발위원회는 “사회·경제정책의 통합”이라는 사회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간 기구 중 가장 적정한 기구라고 판단되는 바, 동 위원회가 사회·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권고함
 - 첫째, 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도 제시되었듯이 빈곤퇴치, 남녀평등 보장, 에이즈·말라리아 퇴치 등은 모두 사회적 성격의 문제임.
 - 둘째, 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모두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들임.(거시경제정책은 모두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
 - 셋째, 사회개발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동 이사회에 대한 권고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인적개발 관련 사회개발이사회 고위급회의 개최시 동 위원회는 금번 회의의 중점의제로 논의되는 “사회·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한 방안 등을 제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사회개발 목표들은 경제적 자원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실현 될 수 없음. 따라서 국제사회는 유엔의 설립 목적과도 일치하는 결속력, 사회선 등의 가치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가치들의 현실적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라. 의제관련 Jose Antonio Ocampo의 기조연설

- 최근 특히 심화되고 있는 거시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격차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식, 이를 위한 하기5개 총족조건들을 제안함.

- 첫째,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 둘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 셋째,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한 성장전략
- 넷째, 인적 자원, 고용, 사회보호체계를 포함한 사회 정책적 측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 경제정책
- 다섯째, 사회·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궁극적으로 양자의 목표가 상충되지 않으며 양 자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뿐만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력, 특히 선진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2.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의제 3(a)) 관련 논의

가. 폐널 토의(2. 12)

(1) 주요 토의내용

(가) Benedict Clements(IMF)

- 성공한 거시경제정책은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제구조 조정은 사회보장, 취약계층의 보호 등의 사회적 목표를 고려하면서 이행되어야 함
- IMF의 경제구조 조정 프로그램하의 국가들은 대부분 건강·교육등 사회정책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IMF 프로그램이 사회적 목표를 감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사회개발을 위한 지출수준의 국제적인 기준 설정시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경제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수립시 ‘transparency’의 중요성 재차 강조

(나) Peter Marris(Yale 대)

- 거시경제정책은 정책집행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보완 하는 방향으로 수집, 추진되어야 함.
-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공공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목표가 간과되었다는 주장을 신중히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를 위하여 미시적인 접근 방법도 요구됨

(다) Emmanuel Tumusiime-Mutebile (우간다 중앙은행)

- 우간다의 빈곤감소실행계획(Poverty Eradication Action Plan)을 통한 경제·사회정책 통합 틀을 소개하면서 동 빈곤감소실행계획은 경제성장과 구조조정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구성요소로 하는 빈곤퇴치 전략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설명함
- 빈곤국가에 있어서 ‘개발’은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퇴치를 의미하며 기본적 사회서비스의 전제조건임
- 개발국들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자금의 비용조달을 외국자본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국내 자금조달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함

(라) Roxana M. Viquez Salazar (IMAS, 코스타리카)

- 사회지출에 대하여 국가 책임이 증대하고 있으며 보건과 의료의 경우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병원에 의하여 국민 전체가 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교육 등 여타사회개발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지출은 지난 5년간 약 30%의 빈곤층의 감소결과를 가져왔음.
- 공공지출에 대한 ‘funding’을 위해 코스타리카는 점차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높은 조세부담은 사회정책의 실현에 주요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의제 3(a). i) 관련 각국대표단 발표

(1) 우리 대표단 발표내용(신언항 사회복지정책실장)

- 균형적인 사회·경제정책 결정 ;
 - 경제정책이 사회정책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유엔의 견해에 동감을 표하며, 시장을 통한 자원의 배분과 사회구성원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함.
 -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은 특히 경제의 전환기나 개혁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생산적 복지” 정책 소개 ;
 -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사용하여 사회부문이 우선 순위에서 뒤떨어 졌으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실시하였음.

- 생산적 복지란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자활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자아실현이 가능토록 함.

□ 우리나라의 경험 및 교훈의 공유 :

-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일방적인 시혜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취약계층의 자활능력이 증진되도록 구성되어야 함.
- 둘째, 사회부문에서의 지출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셋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시 사회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야 함.

※ 우리의 발언 이후 Innerarity 의장은 우리나라의 경험이 전환기에 있는 다른 나라의 정책결정에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면서, 경제성장과정 및 아시아 외환위기 과정에서 경제구조조정 정책추진 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등 사회적목표를 중시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함. 또한, The Council of Europe의 발표 후, 의장은 우리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유럽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회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의 지침이 될 수도 있다고 재차 설명함.

(2) 주요국가 대표 발언요지

(가) 베네주엘라(G77)

- 1995년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의 주장과 같이 사회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특히 개도국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증가되었음
- 국가정책을 통한 시장기능의 실패 보완 및 전지구적 지속성장이 가능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
- 사회·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노력 외에도 국제사회의 협력, 특히 국제적 재정원조국의 역할이 중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은행의 "Structual Adjustment Participatory Review Intiatie(SAPRI)" 및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환경적 영향분석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 스페인(EU 대표)

- '사회·경제정책의 통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유럽연합의 하부구조인 European Council 이 지난 2000년 리스본과 니스회의 개최를 통하여 채택한 행동계획에 대해 오는 3월 바르셀로나 회의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임.
- 거시경제정책은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과 EU 사회보호체제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비정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장애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작년 3위원회에서 논의된 장애관련 결의안 2개 (결의안 56/115, Implementation of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 persons: towards a Society for all in the twenty first century ; 결의안 56/168,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다) 미 국

- 경제 개혁시 고용창출, 빈곤감소,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감소 등 사회개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자유무역과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의 중요성 강조
- 사회평가는 단순히 사회과학연구의 확장을 의미해서는 안되며, 서비스 소비자의 관점들을 포괄하여 민주주의적 관행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구현해야 함.
- 미국의 사회개발노력과 관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학교 배식사업, 부시대통령의 “아동우선 정책('to leave no child behind')”, 80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프로그램, 근로유인적 사회보장 프로그램, 위스콘신주에서 시작되어 연방으로 확대된 근로연계복지정책(Welfare-to-Work Policy)을 소개함.

(라) 북 한

- 세계화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지속성장가능한 사회개발을 도와시한 단기적인 경제성장정책에 있음.
- 사회-경제정책의 통합을 통한 사회개발, 특히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를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 및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함.
- 이와 관련 북한은 정부의 주도하에 무상교육, 무상보건, 무상주택공급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인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념적 영도하에 가능하였던 것임

다. 사회그룹별 유엔사업계획 검토(의제 3(b)) 관련 토의

(1)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 준비상황 및 장애인 관련 특별보고

(가) 제2차 세계고령화회 준비상황 보고 (Felipe Paolillo, 우루과이 대사)

- 오는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예정인 제 2차 세계고령화회의는 세계도처로부터 고위급 정부대표, 비정부간단체 및 민간부문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 회의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개회할 예정임
- 금번 회의에서는 20년전 비엔나 회의시 채택된 “고령화에 대한 국제행동 계획”을 21세기 국제사회의 상황에 맞게 검토·개정 할 것이며 아울러, 고령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임.
- 고령화회의의 준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개발위원회는 2001년 12월 첫 준비회의를 개최, 금년 1월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현재 “2002 국제 행동계획(안)”의 60%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25 -3.1 개최될 제2차 준비회의를 통하여 나머지 40%(건강, 고용, 인권, 빈곤퇴치 관련)를 최종 논의예정임
- 제 2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 채택될 “2002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은 개별 국가,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한 고령화에 대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줄 것이며 이는 다음 문제들을 포함할 것임.
 - 노인과 고령화 문제
 - 노인/고령화와 건강 문제

– 노인의 능력 개발 가능한 사회환경 보장 등

- UN과 스페인 정부는 제 2차 고령화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고령화 이슈가 지난 수십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국제사회의 중점과제로 대두될 수 있기를 희망함.

(나) 장애인 특별보고관(Mr. Bengt Lindqvist)의 보고

- 2002년도에는 3개의 중요한 장애인 관련 회의(제 40차 사회개발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Ad Hoc 위원회)가 개최되어 장애인 문제가 보다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됨.
- 제38차 위원회 회의 후 장애인관련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협약(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Standard Rules)’은 각국별 인권유린 모니터링을 위한 입법과정 및 정책수립시 핵심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되나 기존의 ‘Standard Rules’의 보완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기배포된 보고서(E/CN.5/2002/4)에서는 4가지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권고를 제안한 바,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Standard Rules’보완문제 관련 ; 상기 문제 논의시 “Reaching the most vulnerable”라는 권고안이 기본 텍스트가 되어야 함.
 - 인권과 장애인 ; ‘twin-track approach’를 요구하는 2가지 방안 제시 (기존 인권유린 감시시스템에 장애인 문제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시

스템 설립, -- 인권위원회는 물론 사회개발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다를 것을 권고)

- UN산하 기구간 정보 및 경험 교환 ; 신정보기술은 기구간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바, 인터넷 등을 통한 "virtual inter-agency mechanism"을 구축하는 방안 제안
- "Standard Rules"의 관리시스템 ;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새로운 보고관 지정, 전문가패널 시스템 유지 등을 위하여 현재 'Standard Rules'이행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장애인관련 정책 자문관 등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 결론적으로 장애인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UN Standard Rules의 지속적 이행 ②UN 인권감시 시스템에 장애인 문제 추가, ③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등을 위한 국제사회 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함.

(2) 우리 대표단 발표내용

□ 제2차 고령화회의 관련 ;

- 이번 회의를 통하여 세계화 과정 속에서 급속히 변하고 있는 21세기 국제사회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국제행동계획이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문제의 속도와 규모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active age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함.

- 장애인 문제 관련 ;
 -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Standard Rules'가 좋은 지침이 되었음.
 - 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보고(E/CN.5/2002/4)에서 제시된 'Standard Rules' 이행강화 권고안들을 면밀히 분석 ·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세계 가정의 해”관련 ;
 - 우리나라는 “세계 가정의 해”를 선언한 유엔의 취지에 부응하여 가정 기능회복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조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Innerarity 의장은 우리 대표단 발언 이후 성공적인 제2차 고령화회의를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의 우리의 적극적 동참의지, 장애인문제에 대한 적정한 정책적 대응, 1999년 “세계가족의 해” 후속조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3. 핵심의제 관련 최종 결의 주요내용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에 관한 결의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내용의 중요성 강조

- 아래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을 ECOSOC,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WSSD) 제3차 준비위원회에 회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에 관한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

- 코펜하겐선언, 사회개발특총,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필요성 강조
- 각 국가에 대한 권고
 - 빈곤퇴치, 완전고용, 사회통합, 남녀평등, 기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 불평등 및 경제적 충격의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 개발전략 결정 및 이행시 공동체, NGOs, 사회취약계층의 참여 촉진
 - 사회-경제정책연구, 평가, 정책결정에 대한 연구기구 설립 및 장려
 - 사회개발의 핵심요소인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빈곤퇴치, 완전고용, 사회통합에 순기능적인 전략 모색
 - 사회개발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세제도의 마련
 - 사회영향분석을 예산과정에 반영하고, 정부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사회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해 재정·금융센터의 개혁을 포함한 공공자원의 동원 및 재배분의 제고
 - 사회경제정책 형성과 관련한 정부기구간 협의, 조정 메카니즘의 강화

- 빈곤층 및 여성 친화적인 정책의 추구
- 사회개발정상회의 및 사회개발특총, 천년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회적 지출
- 사회-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
- 민간영역, NGOs 와 건설적인 동반관계 형성
- 입법적 조치의 강구

□ 기금 및 사업관련 유엔 기구, 국제재정원조기구, 원조국 등에 대한 권고

- 세계화 경제에 개도국 및 전환기 국가(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의 참여 역량 강화
- 사회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통합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국가역량 지원
- 개도국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ODA 및 다른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유
- 선진국은 GNP의 0.7%를 개도국에 ODA로, 0.15-0.20%를 저개발국에 공여하기로 한 약속이행을 촉구
- 개도국의 외채문제에 대한 개발지향적, 지속적 해결책 강구
- 유엔의 국가수준 사업들의 국가정책과의 조화
- 사회-경제정책의 상호작용 평가를 위한 경험적 연구, 사회영향 평가의 장려
- 사회개발 관련 기금 및 사업에 관한 유엔전문기구의 참여 및 조정

- 지역위원회를 포함한 유엔 체계 및 다른 지역기구의 지역 협력 및 경험의 공유 촉진 등

나. 장애인 인권 관련 결의

※ 장애인인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멕시코 주도로 제안한 두 결의안이 각각 채택됨.

(1) 장애인 기회균등 촉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결의(스웨덴)

- '세계장애인 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총회 결의 37/52)', '장애인 기회균등 협약(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총회 결의 56/115) 및 장애인 관련 ECOSOC 결의안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 장애인 인권보호 협약 모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56/168) 및 관련협약에 대한 환영 및 특별위원회에 대한 각국 정부, 유엔관련기구 등의 참여 촉구
- 장애인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3차 임기보고 내용의 중요성 강조
- 장애인 기회균등 협약에 따른 장애인 참여 및 평등확보를 위한 정부, 유엔기구, 국제기구, NGOs등의 추가적인 조치 권고
- 장애인의 교육, 보건, 고용, 사회서비스, 주택, 운송, 정보 등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에 권고

- 장애인기회균등 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장애인 특별 보고관의 임기를 2005년까지 연장

(2) 장애인 인권 및 존엄성 보호를 위한 종합적 국제협약에 관한 결의(멕시코)

- 장애인 인권 및 존엄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안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총회결의 56/168 의 중요성 확인
- 장애인 협약과 관련한 장애인 특별보고관의 보고내용에 대한 강조
- 특별위원회에 장애인 특별보고관 및 관련 전문가 패널의 초청
- 장애인 관련 국제기구 참석에 따른 재정소요에 대한 회원국의 지원 및 사무국에 대한 장애인 관련 자료 협조 요구 등

다. 가족의 해 기념행사 준비에 관한 결의(Benin)

- 세계가족의해 후속조치 및 가족관련 유엔사업의 중요성 강조
- 남녀평등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존중은 가족 및 사회적 안녕(well-being) 을 유지하는 주요 요소임.
- 세계가족의 해 10주년 기념행사준비를 위해 국가별 준비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 설치 권고
- 유엔기구 및 국제기구, NGOs, 특히 가족관련기구의 세계가족의 해 10 주년 기념행사의 적극적 준비 및 지방, 국가, 지역적 수준의 노력 촉구

- 가족관련 연구자료를 2003년 12월 유엔본회의에 제출 권고
- 2003년 12월 58차 유엔총회시 세계가족의해 10주년 개최(launching)를 위하여 1회의 본회의 할당
- 2004년 59차 유엔총회시 세계가족의 해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2회의 본회의 할당

4. 기타 논의사항

가. 위원회 작업방법 개선

- 2.12(화) 사회개발위원회는 위원회 작업방법 개선(의장단 선출시기 조정)에 대한 결정(Decision)을 채택함(E/CM.5/2002/L.2)
- 동 결정은 차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기회의 폐회 직후 차기 정기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회기를 개회하고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40차 회의종료직후 41차 회의 1차 session 이 개회되어 41차 의장단을 선출함.

나. 제41차 사회개발위원회 의장단 선출 및 잠정의제 채택

(1) 제41차 사회개발위원회 의장단

- 의장 : Chowdhury 방글라데시 대사
- 부의장 : 스페인, 아르헨티나, 베닌 대표

(2) 제41차 사회개발위원회 잠정의제 채택(E/CM.5/2002/L.7)

- 핵심의제 : 사회개발을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
 - 사회개발의 경험 공유
 - 사회개발에 대한 파트너쉽의 강화
 - 민간영역의 사회적 책임
 - 사회개발에 대한 고용정책의 영향
 - 사회개발전략에 대한 국제재정원조기구의 정책과 역할
- 사회그룹별 유엔사업계획의 검토
 - 청소년이 처한 세계적 상황에 대한 검토
 - 세계 가정의 해 10주년 기념행사의 준비

III. 평가 및 후속조치

1. 관찰 및 평가

- 제 40차 사회개발위원회는 코펜하겐 선언의 공약사항과 사회개발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추가조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합의문 도출과 관련하여 특정한 이슈 및 새로운 현안은 없었으나, 재정지출요소 및 국가간 지원과 관련된 문안에 대하여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G77등 개도국 그룹이 기존의 입장차이를 보임.
- 금번 회의의 주요의제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및 ‘사회그룹별 유엔사업계획 검토’와 관련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지지하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소개, 회원국과 공유하는 계기가 됨.
- “세계 가정의 해” 10주년 기념행사 준비상황을 검토하고 사회 기본단위로서 가정의 중요성 및 가정 중심적 정책(family centered policies)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음.
- 고령화 문제는 특히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분야인 점을 감안,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IPAA) 개정 등 국제적 논의 동향파악 및 국내 고령화문제에 대한 장기전략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2. 향후조치 사항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에 대한 노력
 -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사회개발행동강령 및 2000년 사회개발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추가조치의 지속적인 이행노력. 특히, 경제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있어서 사회보호, 보건, 교육 등 사회적 목표를 중시하여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추진.

□ 금년도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 준비

- 2002년 4월 개최예정인 제2차 세계노년회의에 대비하여 국제고령화 행동계획(IPAA) 수정안 실무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세계 가족의 해 10주년 기념행사 준비

- 2004년 세계 가정의 해 10주년 기념행사에 대비하여 국가준비위원회 구성 등 행사준비 및 UN기구에서 추진하는 세계 가정의 해 10주년 기념 활동들에 적극 참여

□ 사회개발 분야 국제협력 강화

- UN 및 ESCAP 등 유엔지역기구, OECD 등 국제사회의 사회개발 분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부록]

코펜하겐 선언의 10대 공약사항

1. 시민들이 사회개발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 법률적 환경 창출 다짐
2. 단호한 국가적 조치 및 국제협력을 통해서 인류의 도덕적 · 정치적 · 경제적 당위 과제로서의 빈곤퇴치 다짐
3. 자유로이 선택된 생산적 고용 및 직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계를 달성하고 완전고용의 목표를 유지할 것을 다짐
4. 안정적이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모든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로 다짐
5.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사회발전 및 개발에 여성의 참여 증진과 완전한 남녀 평등 달성을 다짐
6.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 기초 의료서비스 향유 및 최상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
7. 아프리카와 최빈국의 경제적 · 사회적 인적자원의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을 다짐
8. 구조조정계획이 빈곤퇴치, 생산적 고용 창출, 사회통합증진이라는 사회 개발의 목표를 포함하도록 다짐
9. 국가별 조치와 국제협력을 통해서 정상회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개발 부문에 할당된 재원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다짐
10.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서 동반자 정신으로 사회개발을 위한 한부지역적 · 지역적 · 국제적 협력의 토대를 강화할 것을 다짐